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
운영에 관한 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9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바이오가 산업·안보·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였으며,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설치(안 제2조 제1항)

- 1)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·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

나. 위원회 기능(안 제2조 제2항)

- 1) 연구개발·상용화·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 심의

다.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- 1) 위원장(대통령),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, 과학기술수석,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·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

라. 분과위원회·특별위원회·협의체 및 자문단(안 제8조)

- 1)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, 협의체 구성

마.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(안 제9조)

- 1)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지원단 설치
- 2)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

바.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(안 제10조)

- 1) 위원회·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·겸임 요청 가능

사. 위원회 존속기한(안 제14조)

- 1)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추진(사전협의 완료)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바이오 과학기술 및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, 국민경제 발전,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연구개발, 상용화,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, 정책,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바이오 관련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바이오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관한 사항
3. 바이오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전략기술 확보 등 안보 대응에 관한 사항
4. 바이오 기술·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
5. 바이오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6. 바이오 관련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7.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·관 및 관련 기관·단체 간 협력체

계 구축에 관한 사항

8.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9.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 및 첨단 연구장비·시설 등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
10.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에 관한 사항

11.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(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)의 사업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허청장 및 질병관리청장

2.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

3. 국가안보실 제3차장

4. 바이오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(後任)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

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·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분과위원회·특별위원회·협의체 및 자문단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·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)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바이오 분야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1급 상당 고위

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0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 소속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11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, 분과위원회·특별위원회·협의체의 위원,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

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의안 소관 부서명〉

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	
연 락 처	(044) 202 - 2916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563
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295